참고 7.

ESG 공시 제도화 동향 및 금융안정에 대한 시사점 [209]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는 전 세계적으로 선택적 보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전환[210]되는 추세이다. 이는 기후변화 등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기인한다. ESG 공시 제도화는 공시 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ESG 분야의 자금조달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ESG 공시 제도화의 동향과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주요국의 ESG 공시제도 동향

현재 주요국의 ESG 공시기준은 대부분 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2023년 6월 발표한 IFRS S1, S2[211]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각국은 ISSB 기준을 자국 법제, 거래소 규정, 산업 여건 등에 맞게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도입 현황을 보면, EU[212]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 및 은행·보험사에 대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다만 최근 들어 적용 대상 범위와 시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미국[213]의 경우 연방 차원의 ESG 공시 도입은 유예되거나 조정 중이나, 일부 주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대기업의 기후정보를 중심으로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홍콩·호주 [214] 는 2026년부터 상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후정보 중심의 ESG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215]도 2027년부터 시가총액 3조엔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참고 7-1).

참고 7-1. 주요국의 ESG 공시제도 동향

국가	적용시점	공시대상	공시내용
EU	2025년	NFRD 적용 기업[1)]	ESG 정보
미국 캘리포니아	2026년	매출 10억 달러 초과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싱가포르 홍콩	2026년	상장기업	기후 정보
호주	2026년	매출 등 일정 규모[2)] 초과 기업	기후 정보
일본	2027년	시가총액 3조엔 이상 상장기업	기후 정보

주: 1) 자산총액 2,500만유로 또는 순매출 5,000만유로를 초과하고 임직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상장기업 및 은행·보험사
2) 매출 5억달러, 자산 10억달러 또는 임직원 500명
자료: 각국 ESG 공시 감독당국

---

209 본고는 김재영 · 이연주(지속가능성장기획팀)가 작성, 민준기(지속가능성장기획팀장)가 검토하였다.

210 IFRS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57%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ISSB 기준을 법·규제 체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거나 도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시가총액의 4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11 IFRS S1은 기업가치와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일반 기준이며, IFRS S2는 기후 관련 위험·기회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이다.

212 EU는 2022년 12월 지속가능성정보공시지침(CSRD)을 채택하여, 2025년부터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FRD) 적용 기업에 대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의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업 부담과 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Stop-the-Clock(25년 4월, 신규 대기업·상장 중소기업), Quick Fix(25년 7월, 임직원 750명 초과), Omnibus I(25년 12월, 1,000명 이상·매출 4.5억유로 이상) 등을 통해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213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SEC 기후공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으나,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주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가 제도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체 법률에 따라 연매출 10억달러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Scope 1·2·3 배출량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214 싱가포르와 홍콩은 2026년부터 전 상장기업에 Scope 1·2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싱가포르 STI 지수 편입 기업에 대해서는 ISSB 기반 기후 정보(26년)와 Scope 3 배출량(27년)을, 홍콩항셍지수 편입 기업은 Scope 3 배출량(27년)을 추가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호주 역시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Scope 1·2 배출량 및 Scope 3 배출량을 각각 2026년과 2027년부터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15 일본은 2028년부터 시가총액 1조엔 이상, 2029년부터는 5천억엔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기후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올해 2월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216]하였다. 정부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정보 공시[217]를 먼저 의무화할 방침[218]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응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을 수립하여 공시해야 한다(참고 7-2).

참고 7-2. 우리나라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

구분	주요 내용
공시 시기 및 대상	-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단계적 공시 시행
Scope 3 유예	- 2031년부터 공시(3년 유예)
공시기준	- IFRS 기준 기반으로 제정 - 일부 기준 완화(톤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의 경우 선택공시 허용)
공시채널	- 거래소 공시 도입 후 법정 공시 전환
공시시기	- 연말 결산시점(3월말) 공시 - 온실가스 배출량은 8월 중순 공시 허용

자료: 금융위원회 「ESG 공시 제도화 방안」(26년 2월 25일)

다만 국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톤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 등에 대해서는 기업이 선택적으로 공시하도록 허용하고, Scope 3 배출량[219]의 경우 2031년부터 공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시채널과 관련해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 후 법정 공시[220]로의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시기는 연말 결산시점인 3월말로 하되, 온실가스 배출량에 한해 반기 결산시점(8월 중순) 공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ESG 공시 제도화의 금융안정 영향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에 기여

ESG 공시 제도화는 기후정보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복원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는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통해 기업의 영업환경 및 자산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고탄소배출 기업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후리스크 취약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시 기후변화를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고려[221]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리스크의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가격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기후정보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관련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다수의 투자자들은 기업의 불충분한 기후정보 공시를 재무적 의사결정의 주된 제약요인으로 지적[222]하고 있으며, 국제 공시기준을 전면 이행하는 기업 또한 아직 일부[223]에 불과하다.

216 금융위원회는 금년 2월 25일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217 한편 기후 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사안에 대한 공시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8 정부는 2029년부터 기후공시 대상기관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219 Scope 1 배출량은 기업이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를, Scope 2 배출량은 전기·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을, Scope 3 배출량은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배출량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220 거래소 공시는 거래소 규정에 따른 공시로 상장회사에 대해 적용되며 위반시 제재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반면, 법정 공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로 위반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21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2021)의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금융감독원(2021)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222 TCFD 「2023 Status Repor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71%, 자산보유기관의 76%가 기후 관련 투자 결정시 '정보부족'을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223 IFRS의 「Progress on Corporate Climate-related Disclosures-2024 Report」에 따르면, 글로벌 상장기업 3,814개사 중 82%가 11개 권고 공시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을 이행했으나, 11개 항목 모두를 충족한 기업은 약 2~3%에 불과했다.

ESG 공시 제도화는 이러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여 자산가격에 기후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제고[224]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보유 자산의 잠재 손실을 식별·측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효성도 높이게 될 것이다.

거시건전성 감독 역량 강화 기반으로 작용

이에 따라 ESG 공시 제도화는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감독 역량 강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SB[225]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양질의 공시 인프라 구축이 기후리스크 관리의 필수 전제조건이며, 금융안정 감독의 출발점임을 강조해 왔다. 특히 기업 수준의 공시 데이터는 금융당국이 시스템 차원의 기후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평가하기 위한 핵심 입력변수(input)로 활용될 수 있다. 즉, ESG 공시 제도화는 개별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를 넘어, 금융당국이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기반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운영시 국제적 정합성 및 신뢰성 확보 중요

다만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제약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각국이 국제기준을 자국 실정에 맞게 조정·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시 요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FSB[226]는 이러한 규제 파편화(fragmentation)가 ESG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저하시켜 글로벌 자본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시 제도화 초기에는 정보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시사점

ESG 공시 제도화, 특히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공시 확대 요구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자본이 ESG 이슈에 보다 강건한 부문으로 배분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기후정보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ESG 공시 제도화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기업의 공시 부담이나 국가간 공시기준 차이 등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ESG 공시를 통해 축적되는 기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등 기후리스크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고 평가모형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이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정책 공조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224 IMF에 따르면,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의 세부 이행요건이 강화된(23년 2월) 이후 이를 충족하지 못한 다수 펀드의 친환경 등급이 하향 조정된 바 있으며, 최고 등급 펀드는 일반 펀드 대비 높은 자금 유입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IMF GFSR (2023.10) 제3장 「Financial Sector Policies to Unlock Private Climate Finance」를 참고하기 바란다.

225 자세한 내용은 FSB(2021) 「FSB Roadmap for Addressing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s」 및 FSB(2024) 「Achieving Consistent and Comparable Climate-related Disclosures」를 참고하기 바란다.

226 자세한 내용은 FSB(2024)의 「Achieving Consistent and Comparable Climate-related Disclosures」를 참고하기 바란다.